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751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8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겸직허가 심사 관련 조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29조제3항의 겸직허가 심사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 
겸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  
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  
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

**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**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9조(검직허가) ① · ②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9조(검직허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 시 공무원의 독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시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.</p>	<p>제29조(검직허가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<u>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 시 공무원의 독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